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부겸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고등학교까지만 학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의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교 학습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만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 4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 제4호에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 중 24세 이전에 대학에 취학하여 재학중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 ----- ----- ----- ----- -----.
1. <u>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u>	1. <u>법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 제4호에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 중 24세 이전에 대학에 취학하여 재학중인</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연 락 처	(044) 202 - 5658